

#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변 호	905
------------	-----

2015년 12월 4일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1. 제안경위

- 2015. 11. 23 박 준희 의원 발의, 찬성자 23인 (2015. 11. 26 회부)

## 2. 제안이유

횡단보도 신호 대기시간 중 시민들이 더위나 비·눈·바람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‘횡단보도 쉼터’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 중 하나로 추가하여 시민의 보도 이용 편익증진과 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산하 제1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의 종류에 ‘횡단보도 쉼터’를 추가함(안 제11조 관련 별표 1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제1실무위원회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“횡단보도 쉼터”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박준희 의원이 발의(찬성자 23인)한 것임.
- 금년 10월 8일 개정·공포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 따르면,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“횡단보도 쉼터”가 추가되어, 횡단보도 쉼터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, 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 쉼터의 디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민의 보도이용 편익 증진, 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관련 별표 1 제2호 중 교통관련시설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횡단보도 쉼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[별표1]

## 심의대상 시설물

### 2. 가로시설물

현 행			개 정 안		
분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	분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
도로부속 시설물	(생략)		도로부속 시설물	(현행과 같음)	
문화관광시설	(생략)		문화관광시설	(현행과 같음)	
가로녹지시설	(생략)		가로녹지시설	(현행과 같음)	
환경관리시설	(생략)		환경관리시설	(현행과 같음)	
교통관련시설	가. 보행자 안내표지 나. 택시·마을버스·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. 정류소 라. 택시 표지판 마. 자전거 보관대 바.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. 주차장 관리소(박스형) 아. 부설주차장 진·출입표지 자.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. 교통 감시시설 카. 볼라드, 보호펜스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div>		교통관련시설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다. 횡단보도 쉼터	
지하철 시설	(생략)		지하철 시설	(현행과 같음)	
도로점용허가 시설물	(생략)		도로점용허가 시설물	(현행과 같음)	